

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병윤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3747호

다. 제출일자 : 2026. 6. 9.

라. 회부일자 : 2026. 6. 9.

2. 제안사유

- 현행 노인복지법 상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
- 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,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어르신 교통비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,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6. 6. 10. ~ 2026. 6. 14.
- 제출의견 : 있음 (이메일 접수 2026. 06 .12.)
 -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재정부담,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조세부담, 대중교통 적자 증가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 제시

라. 관계기관 의견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
- 현행 노인복지법상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 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하는 현실임
-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인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 동의함

1) ‘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’ 교통정책과-10321호(2026. 6. 9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자 지원대상, 시장의 책무, 지원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조례 목적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서울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%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²⁾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복지 정책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

2) ‘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 21%돌파...이제 서울도 초고령사회’ 중앙일보(2026.01.04.)

■ 조례 용어 정의(안 제2조)

- 동 조례안 제2조는 ‘어르신’, ‘버스’, ‘어르신 교통비 지원’ 등을 각각 정의하는 것으로 ‘어르신’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주민으로, ‘버스’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³⁾에서 말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정의하고

‘어르신 교통비 지원’은 앞서 정의한 어르신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한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임

■ 지원대상(안 제3조)

- 동 조례안 제3조는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당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과 관련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

3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(자동차의 종류)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

제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, 제4호 마을버스운송사업

-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4) 및 같은 법 시행령⁵⁾ 등에 따라 65세 이상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버스 교통비 지원대상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하철과 버스는 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버스 교통비 지원에서만 65~69세 어르신들이 제외되는 것은 교통복지 차별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 할 것임

※ 서울시 노인층 인구수 분포 현황

(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자료, '25.12월말 기준)

인구수 계	65세 미만	65~69세	70세 이상
9,229,548명	7,399,446명	648,113명	1,251,989명

다만,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, 대구시 등은 지원대상을 70세로 하고 있으며 서울

4)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(경로우대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5)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9조

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(이하 “경로우대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.

[별표 1]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(제19조제1항관련)

시설의 종류	할인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2.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)	100분의 100

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~69세 노인인구가 약 64만 8천명에 육박하고, 낮은 운송원가 및 환승할인 등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지원대상 기준을 70세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점도 있으며 실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버스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이 상이한 상황임

※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인 및 어르신 교통비 등 지원 조례 현황

구 분	시행일	지원대상	관련 조례
광역시	인천시 '26.7.1.	인천 거주 <u>75세 이상</u>	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
	대구시 '23.1.1.	대구 거주 '28년 <u>70세 이상</u> (23년 75세부터 1년씩 하향 조정)	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
	대전시 '23.9.15.	대전 거주 <u>70세 이상</u>	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
서울	중구 '23.11.1.	중구 거주 <u>65세 이상</u>	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	강남구 '24.9.1.	강남구 거주 <u>65세 이상</u>	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	종로구 '25.9.1.	종로구 거주 <u>65세 이상</u>	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

■ 교통비 지원 등 및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4·제5조)

- 동 조례안 제4조는 시장이 안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⁶⁾에서는 고령

6)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

자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⁷⁾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할 것임

- 다만,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 자료⁸⁾에 따르면 동 조례시행시 '27년부터 '31년까지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감면액은 연평균 1,157억 72백만원(총 5,788억원)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동 제정안이 실행될 경우 관련 재원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

동 조례안 제5조에서도 시장이 어르신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, 지원방법, 재원조달 사항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은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

■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중단 등(안 제6·제7조)

- 동 조례안 제6조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시스

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- 7)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“교통약자”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8) ‘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’
 - 1. 비용발생요인 :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제3조(지원대상)에 근거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지출(비용)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3. 비용추계의 결과 : 총 비용 578,864,348천원(연평균 115,772,870천원) -이하 생략-

템 구축·운영과 그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충하고 관련 경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정산사업자와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실제 서울시 통합환승 할인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정산, 운송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(주)티머니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

- 안 제7조는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에서 타인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후속조치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실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계획도 고민이 필요해 보임

■ 사후관리 및 준용(안 제8조·제9조)

- 동 조례안 제8조는 시장이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 논의나 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한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

안 제9조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⁹⁾등을 준용

9)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

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어르신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기시행하는 곳은 중구('23.11.1.), 강남구('24.9.1.), 종로구('25.9.1.) 등으로 관련 사업이 통합되고 시비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필요한 근거로 사료됨

- 다만,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은 각자의 시스템을 통해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동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자치구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및 조정여부 그리고 시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